

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경 상 북 도 의 회

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5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0. 10. 6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입법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 가입수를 3개에서 2개로 변경함
(안 제17조2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나. 부패영향평가 : 부패 유발요인 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 없음
- 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첨부

경상북도 조례 제 호

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2항 중 “3개”를 “2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2(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 단체) ① (생 략)	제17조의2(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 단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경우 각 의원은 <u>3개</u>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2개</u> ----- 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관련부서 협의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 가입규정을 변경(3개 단체->2개 단체)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수반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함.

4. 작 성 자

-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김교준(054-880-5063)



경 상 북 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

1. 관련 : 자연재난과-11798(2020.9.16.)호, 안전정책과-12631(2020.9.16.)호,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-989(2020.9.17.)호, 교육정책과-5487(2020.9.16.)호, 건축디자인과-18015(2020.9.17.)호
2.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,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
조례(규칙) 명	검 토 의 건
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○ 본 조례안 제9조(운영지원)에 따른 비용추계를 한 결과, 향후 5년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·훈련 등에 따른 720백만원 (연평균 144백만원)의 비용 수반되나, 기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별도 추가 비용 발생은 없음 ○ 다만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, 신규 사업을 추진 시에는 국비확보 방안, 지방비 부담 등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
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	○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 재정수반 사항이 없음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
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○ 본 조례 개정안은 연구단체 가입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재정수반 사항이 없음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
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	○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와 지역대학의 상호협력, 협력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,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에는 어려움이 있음 ○ 향후 기본계획 수립 후 신규사업을 추진 할 경우,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, 국비확보 방안·시군 공동추진,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

경 상 북 도 주 거 기 본 조 례 안	○ 본 조례안은 「주거기본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 주거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 되는 것으로, 안 제9조에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정확한 비용추계에는 어려움이 있으며, 안 제17조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향후 5년간 10억(연간 2억)으로 비용추계 됨 ○ 향후 종합계획 수립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,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, 국비확보 방안·시군비 부담·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끝.

경 상 북 도 지 사

수신자 자연재난과장, 안전정책과장,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(경상북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), 교육정책과장, 건축디자인과장

주무관 김정윤 예산총괄팀장 이상현 예산담당관 전결 2020. 9. 21.
서정찬

협조자

시행 예산담당관-12082 접수

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/ <http://www.gb.go.kr>

전화번호 054-880-2153 팩스번호 054-880-2189 / kjy0102@korea.kr / 비공개(5)

"생활 속 거리두기, 거리를 두면 안전이 보입니다."